

제 15 장
무역과 환경

제 15.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와 인정하고, 자국의 법에 따른 환경 의무와 그들이 당사자인 다자 환경 협정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무역과 환경 정책 간의 상호 지지를 인정하고, 이 협정을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환경 사안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환경당국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제 15.2 조
보호 수준

자국의 환경 보호 수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 15.3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수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제 15.4 조 구제 및 절차적 보장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이해관계인이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특정 사안에서 자국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인에게 그 당사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한 행정, 준사법 또는 사법 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그 법 위반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에 있어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서 언급된 행정, 준사법 또는 사법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그 절차는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공평하고 독립적인 자연인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그 절차는 법 또는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된다.

다. 그 절차는 절차 당사자에게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하고 정보 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라. 그 절차는 자국의 법률 체계의 틀 안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고 불합리한 수수료 또는 시간제한이나 부당한 지연을 수반하지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판정이

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한 경우,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하며

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법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고, 그리고

다. 절차의 당사자가 제시한 정보 또는 증거에 기초하도록 규정한다.

5. 각 당사국은 또한 적절한 경우에 절차의 당사자가 자국법에 따라 절차의 최종 판정에 대한 재심사와 정당한 경우 정정 또는 재결정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15.5 조

특명성

각 당사국은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에 관한 절차에 대한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한다.

제 15.6 조 환경과 기업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자국의 환경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5.7 조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1. 양 당사국은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유인에 기초한 메커니즘이 환경 법에 따른 규제 조치를 보완하면서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의 달성을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에 따라 그러한 메커니즘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에 따라 환경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성과 목표 및 기준의 개발, 수립, 유지 또는 개선을 장려한다.

제 15.8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며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3. 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회의의 요약 기록을 준비한다.
4.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 또는 조치에 대한 보고서 및 권고를 준비할 수 있다. 이 보고서와 권고의 사본은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5. 위원회의 요약 기록, 보고서 및 권고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7. 위원회는 이 장의 운영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장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 15.9 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협의, 정보 교환 및, 적절한 경우,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접촉선에 서면 요청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서는 문제가 되는 사안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주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3. 협의 동안, 각 당사국은 제기된 사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4. 이러한 협의를 목적으로 특별히 준비된 서류를 포함하여, 협의는 비밀로 하며, 어떠한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5.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협의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협의는 요청서를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검토에 기여할 수 있는 인, 조직 또는 기관의 정보나 견해를 구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이 제 2 항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 따른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신속하게 응답한다. 이러한 협의를 목적으로 특별히 준비된 서류를 포함하여 고위급 협의는 비밀로 하며, 어떠한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고위급 협의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요청 접수부터 120 일 내에 종결된다.

제 15.10 조 공공 정보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인의 문의를 접수하고 고려함을 규정한다.

제 15.11 조 검토 패널

1. 고위급 협의 종결 후에, 요청 당사국은 협의에서 사안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패널이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당사국은 또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 요청서 사본을 전달한다.

2. 검토 패널은 국가 접촉선이 제 1 항에 언급된 요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설치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검토 패널의 위임사항은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제 15 장(무역과 환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검토 패널 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3. 검토 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최종 보고서의 제출부터 3 개월 내에 그리고 그 보고서를 고려하여, 그 사안을 다루기 위한 상호 만족스러운 조치계획에 동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개발한 조치계획은,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대중에 신속하게 공개된다. 조치계획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 그 사본을 제출한다.

4. 양 당사국은 검토 패널이 설치된 후 어느 시점에서라도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 검토 패널에 그 해결안을 통지한다. 검토 패널이 이 통지를 접수하면 패널 절차는 종료된다.

5. 부속서 15-가는 패널위원 선정 및 검토 패널과 관련된 절차에 적용된다.

제 15.12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 15.13 조

대중 참여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되는 양 당사국 회의 및 협력 활동을 포함한 활동을 대중에 알린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에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5.14 조

비밀정보의 보호

각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비밀정보로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한 정보, 특히 개인 또는 상업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 15.15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조건으로 상호 관심 있는 협력 활동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이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각 당사국의 프로그램, 개발 전략 및 국가적 우선순위와 합치할 것, 그리고

나. 그러한 활동의 개발과 이행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

제 15.16 조

협력 분야

1. 이 장과 관련된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양자,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

나.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교환

다. 다자간 환경 협정과 국제 무역 규칙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 교환

라. 환경 재난 및 비상사태의 예방과 관리

마. 화학물질 관리를 포함한 산업 활동의 환경적 측면

바.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을 수립할 우선순위 분야를 확인하기로 합의하고, 이 협정 발효 후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 및 활동을 포함한 작업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제 15.17 조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란 제 15.8 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위원회를 말한다.

환경법이란 다음을 통하여 환경 보호 또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법령이나 규제 규정 또는 그 밖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말한다.

가. 오염원 또는 환경 오염물질의 방출, 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 저감 또는 통제

나.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야생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보호되는 자연 지역의 보전 및 보호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천연자원에 대한 상업적 채취나 개발 또는 자급자족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 패널이란 제15.11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경우에 있어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가. 조사, 공소, 규제 또는 준수의 사안에 대하여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함을 반영하는 경우, 또는

나. 보다 우선한다고 결정된 다른 환경 사안에 대한 집행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선의의 결정의 결과인 경우

부속서 15-가
검토 패널과 관련된 절차

1. 검토 패널은 2명의 패널위원과 1명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2.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당사국의 검토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각 당사국은 1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 나. 한쪽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당사국의 국민인 자격을 갖춘 후보자 중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3. 의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면서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 이름을 제공한다. 이 명단은 당사국의 검토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제공된다.
 - 나. 요청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3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고, 명단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후보자 중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면서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명단은 가호에 따른 명단 접수 후 7일 내 또는 제15.11조에 언급된 검토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 후 37일 내 중 더 빠른 시일에 제공된다. 그리고
 - 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명단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3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의장은 가호와 나호에 따라 양 당사국이 제안한 6명의 후보자 중에서 추가 7일 내에 요청 당사국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4. 검토 패널은 환경법, 이 장에서 다루는 사안 및 가능한 한도에서 국제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다. 검토 패널의 구성원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어느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어느 당사국 정부와도 연계되지 않는다. 검토 패널은 양 당사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인 개인들로 구성된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검토 패널은 부속서 20-가(행동 규범) 및 부속서 20-나(절차 규칙)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변경과 함께,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한 부속서들과 이 부속서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부속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6. 검토 패널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은 검토 패널에 서면 및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발의로, 검토 패널은 적절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그렇게 취득된 모든 정보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7. 검토 패널은 양 당사국에 중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보고서는 사실의 조사 결과, 요청을 받는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패널의 판정 및 검토 패널의 조사 결과, 판정 및 권고의 근거를 명시한다.

8. 검토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 선정부터 12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다른 기한 내에 중간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중간 보고서 제출부터 45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검토 패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 패널은 그 보고서를 재검토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9. 검토 패널은 중간 보고서 제출부터 6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검토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그 보고서의 양 당사국에 대한 제출 30일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공표될 수 있다.